

『서울특별시교육청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동구 제4선거구 출신 황인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직업계고 취·진학을 저하 문제가 심화되고, 저출생·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취업률 저하 및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침체 등에 따라 특성화고 취업 여건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교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특성화고 장학금 사업이 단계적으로 축소·종료되어 정부 국정과제와 서울교육정책과 부합하는 직업교육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이에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졸업 후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전개함으로써 직업교육 강화 및 고등학교 졸업자의 사회진출확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서울특별시 내 학생의 직업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춘 직업인을 육성하고 고등학교 졸업자의 사회진출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감의 책무에 대한 규정, 학습지원금 지원 근거 및 목적,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규정, 지급 중지와 환수 조치에 대한 규정, 학습지원금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 학습지원금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평가에 대해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